

<부록 5> 문교부직제에 나타난 과학교육 담당 조직의 변천(상세)

순	시행일자	직제	조직과 업무분장	비고
1	1948. 11. 4	대통령령 제22호	* 과학교육국 과학진흥과 : 과학의 진흥과 보급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과학교육국 하부조직 : 과학진흥과, 농업교육과, 상공교육과, 수산교육과 * 국장 : 이사관, 기감 또는 편수관, 과장 : 서기관 또는 기정	과학교육국 신설 과학진흥과 신설
2	1950. 3. 31	대통령령 제308호	* 기술교육국 과학진흥과 : 과학의 진흥보급 및 국내 타과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 기술교육국 하부조직 : 과학진흥과, 기술교육과, 실업교육과 * 국장 : 이사관 또는 기감, 과장 : 서기관 또는 기정	과학교육국 폐지
3	1955. 2. 17	대통령령 제1000호	* 기술교육국 과학기술과 : 직업교육, 기술학교 및 과학관상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 기술교육국 하부조직 : 실업교육과, 과학기술과, 교육시설과 * 국장 : 이사관, 과장 : 서기관 또는 기정	과학기술과 신설
4	1961. 10. 2	각령 제180호	* 학무국 기술교육과 : 기술교육 및 직업교육의 지도와 과학진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학무국 하부조직 : 교육지도과, 기술교육과, 편수과,	명칭에 '과학'이 들어간 조직 없음

순	시행일자	직제	조직과 업무분장	비고
			교육과정과	
			* 국장 : 행정이사관, 과장 : 행정서기관	
			* 고등교육국 과학교육과 : 과학교육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과학교육과가 신설되었으나 과학교육 관련 업무 없음
			1. 실업계고등전문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폐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전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하는 학교법인 기타 법인의 설립·폐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시설·설비의 기준과 그 시설·설비의 조사 및 감독	
5	1963. 12. 16	각령 제1737호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실업계대학의 교육의 지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기술원의 양성 및 기술원 자격에 관한 사항	
			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학생부담금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 고등교육국 하부조직 : 대학교육과, 교직과, 과학교육과	
			* 국장 :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 과장 : 행정서기관	
			<참고>	
			* 보통교육국 실업교육과 : 실업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순	시행일자	직제	조직과 업무분장	비고
			분장한다	
			1.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전호의 학교를 설치하는 학교법인 기타 법인의 설립·폐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실업계 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시설·설비의 기준 및 그 시설·설비의 조사·감독	
			4. 전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이들을 시설·경영하는 학교법인 기타 법인의 재정감독에 관한 사항	
			6. 실업계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두는 기술원양성기관에 관한 사항	
			7. 대여장학금에 관한 사항	
			8. 과학전람회·주산능력검정에 관한 사항	
			* 보통교육국 하부조직 : 교육행정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과, 실업교육과	
			* 과학교육국 과학교육과 : 과학교육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과학교육국 신설
6	1967. 4. 14	대통령령 제3011호	1. 각급학교의 과학교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전 직제 중 실업교육과, 과학교육과
			2. 과학 및 기술계교원의 양성과 현직교육(해외훈련	

순	시행일자	직제	조직과 업무분장	비고
			을 포함한다)	삭제
			3. 각급학교의 기초과학교육의 지도 및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과학교육과 업무
			4. 각급과학단체의 지도육성 및 감독	중에 과학교육과
			5. 대여장학금에 관한 사항	관련 없는 업무가
			6. 의약계 및 간호학교의 지도·감독과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많음
			7. 부속병원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8. 시청각교재 및 과학교재기구의 심사	
			9. 시청각교재연구기관의 지도·감독	
			10. 여성가정교육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국내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과학교육국 하부조직 : 과학교육과(과학교육계, 의약교육계, 시청각교육계, 가정교육계), 농수산교육과, 상공교육과	
			* 국장 :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 과장 : 행정서기관	
7	1967. 11. 2	대통령령 제3265호	* 편수국 : 교육과정의 조사·연구와 교과용도서의 편수·검정 및 인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편수국에 교과별로 편수관·부편수관 및 편수관보를 둔다	교과별 편수관 신설(교육전문직인 과학 편수관 추정)

순	시행일자	직제	조직과 업무분장	비고
			* 편수국 하부조직 : 편수과, 발행과 * 국장 :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 과장 : 행정서기관	
8	1969. 12. 4	대통령령 제4381호	* 과학교육국 과학교육과 : 과학교육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의 과학교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과학 및 기술계교육의 양성과 현직교육(해외훈련을 포함한다) 3. 각급학교의 기초과학교육원의 지도 및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4. 각종과학단체의 지도육성 및 감독 5. 대여·장학금에 관한 사항 6. 의약계 및 간호학교의 지도·감독과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7. 부속병원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8. 시청각교재 및 과학교육기구의 심사 9. 시청각교재연구기관의 지도·감독 10. 여성가정교육에 관한 사항 11.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공업·농업·상업·수산·해양계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를 제외한다) 및 간호학교의 설치·폐지와 이를 유지 경영하는	

순	시행일자	직제	조직과 업무분장	비고
			학교법인 기타법인의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12. 기타 국내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과학교육국 하부조직 : 과학교육과(과학교육계, 의학교육계, 시청각교육계, 가정교육계), 농수산교육과, 상공교육과 * 국장 :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 과장 : 행정서기관	
			* 편수국 : 교육과정의 조사·연구와 교육용도서의 편수·검정 및 인정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편수국에 교과별로 편수관 또는 교육연구관을 둔다 * 편수국 하부조직 : 편수과, 발행과 * 국장 :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 과장 : 행정서기관	
9	1970. 1. 26	대통령령 제4535호	* 장학실 과학교육담당관 : 과학교육장학담당관은 과학교육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분담한다 1. 교육의 기획·조사·연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교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교육평가 및 입학시험제도에 관한 사항 4. 연구학교 및 교육연구단체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5. 장학금에 관한 사항	장학실에 교육전문직인 과학교육담당관 신설

순	시행일자	직제	조직과 업무분장	비고
			6. 재외교포교육의 장학지도에 관한 사항	
			* 장학실 하부조직 : 의무교육장학담당관, 중등교육장학담당관, 고등교육장학담당관, 과학교육장학담당관 각 1인	
			* 실장 : 장학관, 담당관 :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기타 별정직 국가공무원	
			* 과학교육국 과학교육과 : 과학교육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의 기초과학교육지도	
			2. 실업계 학교의 설치·폐지 또는 지도·감독과 이들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기타법인의 설립·폐지 또는 지도·감독 다만, 중학교·고등학교 및 대학의 설치·폐지와 이들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기타 법인의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3. 과학기술계교원의 양성과 교육·훈련	
			4. 기술원의 양성과 각종 실무능력의 검정	
			5. 과학기술교육단체의 지도·육성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과학교육국 과학교육기획담당관 : 과학교육기획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직접 보좌한다	

순	시행일자	직제	조직과 업무분장	비고
			* 과학교육국 하부조직 : 과학교육과, 교육외자과, 과학교육기획담당관, 시청각교육담당관 각 1인 * 국장 :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 과장과 담당관 : 행정서기관	
			<참고> * 교육외자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실업계학교의 시설·설비의 기준과 건축·시설·설비의 조사 및 지도·감독 2. 교육차관사업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교육을 위한 교육외자에 관한 사항 * 시청각교육담당관 : 시청각교육사무	
			* 편수국 : 교육과정의 조사·연구와 교육용도서의 편수 및 검인정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편수국에 교과별로 편수관 또는 교육연구관을 둔다 * 편수국 하부조직 : 편수과, 발행과 * 국장 :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 과장 : 행정서기관 또는 편수관(편수과장)	
10	1970. 8. 31	대통령령 제5320호	* 장학실 과학교육장학담당관 : 과학교육장학담당관은 과학교육의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교육의 기획·조사·연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순	시행일자	직제	조직과 업무분장	비고
			2. 교원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3. 교육평가 및 입학시험제도에 관한 사항 4. 연구학교 및 교육연구단체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5. 장학금에 관한 사항 6. 재외교포교육의 장학지도에 관한 사항 * 장학실 하부조직 : 의무교육장학담당관, 중등교육장학담당관, 고등교육장학담당관, 과학교육장학담당관 각 1인 * 실장 : 장학관, 담당관 :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기타 별정직 국가공무원	
			* 과학교육국 과학교육과 : 과학교육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의 기초과학 교육의 지도 2. 실업계학교의 설치·폐지 또는 지도·감독과 이들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기타 법인의 설립·폐지 또는 지도·감독. 다만, 중학교·고등학교 및 대학의 설치·폐지와 이들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기타 법인의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3. 과학기술계 교원의 양성과 교육·훈련 4. 기술원의 양성과 각종 실무능력의 검정	

순	시행일자	직제	조직과 업무분장	비고
			5. 과학기술 교육단체의 지도·육성	
			6. 기타 국내 다른 과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과학교육국 과학교육기획담당관 : 과학교육기획사무 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과학교육국 하부조직 : 과학교육과, 교육외자과, 과 학교육기획담당관, 시청각교육담당관 각 1인	
			* 국장 :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 과장과 담당 관 : 행정서기관	
			<참고>	
			* 교육외자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실업계학교의 시설·설비의 기준과 건축·시설· 설비의 조사 및 지도·감독	
			2. 교육차관사업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교육을 위한 교육외자에 관한 사항	
			* 시청각교육담당관 : 시청각교육사무	
			* 편수국 : 교육과정의 조사·연구와 교육용도서의 편 수 및 검인정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편수국에 교과별로 편수관 또는 교육연 구관을 둔다	
			* 편수국 하부조직 : 편수과, 발행과	

순	시행일자	직제	조직과 업무분장	비고
			* 국장 :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 과장 : 행정 서기관 또는 편수관(편수과장)	
			* 과학교육국 과학교육과 : 과학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 기초과학교육의 지도·감독 2. 과학기술계교원의 양성 및 재교육과 실과교원의 수당 지급 3. 과학기술교육단체의 지도·육성 4. 과학교육심의회의 운영 5. 과학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시청각교육에 관한 사항	
11	1971. 7. 26	대통령령 제5722호	* 과학교육국 하부조직 : 실업교육과, 과학교육과, 시 설과, 교육차관사업담당관 1인 * 국장 :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과장과 담당관 : 서기관	
12	1972. 2. 15	대통령령 제6019호	* 장학실 하부조직 : 의무교육장학담당관, 중등교육장 학담당관, 고등교육장학담당관 각 1인	장학실 과학교육장 학담당관 폐지
			* 과학교육국 과학교육과 : 과학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의 진흥계획 2. 각급학교의 기초과학교육의 지도·감독 3. 과학기술계 교원(대학을 제외한다)의 교육	
13	1973. 3. 9	대통령령 제6531호		

순	시행일자	직제	조직과 업무분장	비고
			4. 과학기술교육단체의 지도·육성 5. 과학교육심의회운영 6. 시청각교육에 관한 사항 * 과학교육국 하부조직 : 실업교육과, 공업교육과, 과학교육과 * 국장 :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과장 : 서기관	
			* 편수국 : 교육과정의 조사·연구와 교육용도서의 편수 및 검인정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편수국에 교과별로 부이사관·서기관 행정사무관 교육연구관을 둔다 * 편수국 하부조직 : 편수과, 발행과 * 국장 :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과장 : 서기관	교과별 편수업무 일반직 담당 가능
14	1978. 3. 14	대통령령 제8889호	* 장학실 과학교육담당관 : 과학교육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학실장을 보좌한다 1. 수학교육 2. 물리·화학·생물교육 3. 지구과학교육 4. 농업·공업·수산·해양·산업·가정교육 * 장학실 하부조직 : 교육연구담당관, 새마을교육담당관, 인문교육담당관, 사회교육담당관, 과학교육담당관, 교과서행정담당관 각 1인	장학실에 교육전문직인 과학교육담당관 신설

순	시행일자	직제	조직과 업무분장	비고
			* 실장 : 장학관, 교과서행정담당관 : 부이사관, 담당관 : 장학관	
			* 산업교육국 과학교육과 : 과학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과학교육국→산업교육국
			1. 과학교육의 진흥계획 수립	
			2. 각급학교의 기초과학 교육의 지도감독	
			3. 과학교육단체의 지도육성	
			4. 과학교육심의회 운영	
			5. 시청각교육 및 전자계산교육	
			6. 수산·해양·간호·보건계 전문학교 및 전문대학의 설치·폐지 및 수산·해양·간호·보건계 각급 학교(대학을 제외한다)의 지도 감독	
			7. 제6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기타 법인의 설치·폐지와 지도감독	
			8.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학교법인 및 기타 법인의 감독	
			9.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험실습	
			* 산업교육국 하부조직 : 실업교육과, 공업교육과, 과학교육과	
			* 국장 :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과장 : 서기관	
15	1979. 3. 19	대통령령 제9380호	* 산업교육국 과학교육진흥담당관 : 과학교육진흥담당	과학교육과를 폐지

순	시행일자	직제	조직과 업무분장	비고
			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하고 일반직인 과
			1. 과학교육의 진흥계획	학교육진흥담당관
			2. 각급학교의 기초과학교육의 지도	신설
			3. 과학교육단체의 지도·육성	
			4. 과학교육심의회 운영	
			5. 시청각교육 및 전자계산 교육	
			6. 학생과학관의 지도·감독	
			7. 국제연합아동기금에 의한 사업	
			8. 과학실험학교의 지도·감독	
			* 산업교육국 하부조직 : 전문대학행정과, 전문대학학 무과, 산업교육과, 과학교육진흥담당관 1인	
			* 국장 :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과장 및 담당관 : 서기관	
			* 장학실 과학·기술교육장학관 : 과학기술교육장학관은 다음 사항의 장학업무에 관하여 장학실장을 보좌한다	과학교육담당관→ 과학·기술교육담 당관
			1. 기초과학교육	
			2. 실업계고등학교 및 산업체부설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지도	
			3. 기술교육	
			* 장학실 하부조직 : 교육연구장학관, 도의교육장학관, 생활지도장학관, 보통교육장학관, 과학·기술교육장 학관, 예·체능교육장학관 각 1인	
16	1980. 2. 27	대통령령 제9788호		

순	시행일자	직제	조직과 업무분장	비고
			* 장학실장 및 각 장학관 : 장학관	
			* 산업교육국 과학교육과 : 과학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과학교육진흥담당관→과학교육과(분장 내용은 같음)
			1. 과학교육의 진흥계획	
			2. 각급학교의 기초과학교육의 지도	
			3. 과학교육단체의 지도·육성	
			4. 과학교육심의회 운영	
			5. 시청각교육 및 전자계산 교육	
			6. 학생과학관의 지도·감독	
			7. 국제연합아동기금에 의한 사업	
			8. 과학실험학교의 지도·감독	
			* 산업교육국 하부조직 : 전문대학행정과, 전문대학학무과, 산업교육과, 과학교육과	
			* 국장 :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과장 : 서기관	
			* 편수국 과학교육담당관 : 과학교육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교과별 편수관→과학교육담당관 신설
			1. 수학, 물리, 화학 및 생물교육	(전 직제의 장학실
			2. 지구과학교육	과학교육장학담당관의 업무와 유사)
			3. 농업, 공업, 상업, 수산, 해양 및 가정교육	
			* 편수국 하부조직 : 편수과, 발행과, 교육과정담당관, 인문교육담당관, 사회과교육담당관, 과학교육담당관	

순	시행일자	직제	조직과 업무분장	비고
			각 1인	
			* 국장 :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장학관, 담당관 : 장학관, 과장 : 서기관	
			* 장학편수실 자연과학편수관 : 자연과학편수관은 편수업무 중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장학실과 편수국을 통합하여 장학편수실 신설(편수기능+장학기능)
			1. 수학·물리·화학 및 생물교육	
			2. 지구과학교육	
			3. 농업·공업·상업·수산·해양 및 가정교육	
			* 장학편수실 하부조직 : 편수총괄관, 교육과정담당관, 인문과학편수관, 사회과학편수관, 자연과학편수관, 교육연구장학관, 정신교육장학관, 교과지도장학관, 생활지도장학관 각 1인	
17	1981. 11. 2	대통령령 제10535호	* 장학편수실장, 편수총괄관, 편수관, 장학관, 담당관 : 장학관	
			* 보통교육국 과학기술과 : 과학기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산업교육국의 과학교육과와 산업교육과를 과학기술과로 개편하여 보통교육국에 이관
			1. 과학교육진흥계획의 수립	
			2. 실업교육진흥계획의 수립	
			3. 각급학교 기초과학교육의 육성	
			4. 시청각교육 및 전자계산교육	
			5. 학생과학관 및 실업교육단체의 지도·육성	

순	시행일자	직제	조직과 업무분장	비고
			6. 과학실험학교 및 실업계 각급학교의 지도·감독 * 보통교육국 하부조직 : 교육행정과, 교육재정과, 의무교육과, 과학기술과 * 국장 :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과장 : 서기관	
18	1982. 3. 20	대통령령 제10769호	* 장학편수실 자연과학편수관 : 자연과학편수관은 편수업무 중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수학·물리·화학 및 생물교과 2. 지구과학교과 3. 농업·공업·상업·수산·해양 및 가정교과 * 장학편수실 하부조직 : 편수관리관, 교육과정담당관, 인문과학편수관, 사회과학편수관, 자연과학편수관, 교육연구장학관, 정신교육장학관, 교과지도장학관, 관리관 생활지도장학관 각 1인 * 장학편수실장, 편수관리관, 편수관, 장학관, 담당관 : 장학관	교육→교과
19	1986. 8. 25	대통령령 제11959호	* 장학편수실 자연과학편수관 : 자연과학편수관은 편수업무 중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수학·물리·화학 및 생물교과 2. 지구과학교과 3. 농업·공업·상업·수산·해양 및 가정교과 * 장학편수실 하부조직 : 편수관리관, 교육과정담당관,	종전 직제와 변화 없음

순	시행일자	직제	조직과 업무분장	비고
			인문과학편수관, 사회과학편수관, 자연과학편수관, 교육연구장학관, 정신교육장학관, 교과지도장학관, 생활지도장학관 각 1인	
			* 장학편수실장, 편수관리관, 편수관, 장학관, 담당관 : 장학관	
			* 과학교육국 실업교육과 : 실업교육과는 고등학교 이 하의 각급학교에 있어서의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첨단과학교육과 기 초과학교육을 강화
			1. 실업교육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하기 위하여 과학
			2. 과학교육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에 관한 기구
			3. 기초과학교육의 육성·지원	를 확대 개편
			4. 과학실험학교의 지원	
			5. 실업계고등학교의 실험실습·산학협동 및 현장실 습에 관한 사항	과학교육국 신설
			6. 학생과학관 및 실업교육단체의 지도·육성	실업교육과는 종전
			7. 과학교육심의회 및 산업교육심의회 운영	의 보통교육국 과
			8. 시청각교육 및 전자계산 교육	학기술과를 이관받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아 개편
			* 과학교육국 하부조직 : 실업교육과, 과학교육과, 전 문대학행정과, 전문대학학무과	
			* 국장 :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 과장 : 서기관	

순	시행일자	직제	조직과 업무분장	비고
			<참고> * 과학교육과는 전문대학 이상의 각급학교에 있어서의 과학교육과 신설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 실험실습 및 산학협동의 지원 4. 기초 및 첨단과학기술 연구의 지원 5. 과학기술교육 관계 학술·연구단체의 지원 6. 교육관계전산화 개발에 관한 연구	